



공정위의 2004년 중점시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공정위의 최고 목표이자 과제로 삼아 올해에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의한 불공정성을 바로 잡아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단기적으로 추진중인 직접적인 투자촉진시책과 더불어,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경쟁제한적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부의 실패를 보정하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등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2004년 중점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격규제, 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이래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경쟁제한적인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및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이 다수 잔존하였다. 이러한 규제들에 의한 정부의 실패를 보정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경쟁제한

적인 법제화된 규제들을 개혁하고자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추진, 법령협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23개 부처 소관 111개 법령상 174개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하였고, 올해에는 동 제도들에 대해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독과점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별기업과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불공정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인정제도 보완 등을 위해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측정·평가 등의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보호장치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위해 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강화 등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후생을 제고할 방침이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표준약관의 보급 및 사용확대와 표준약관의 허위사용 제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다음주중 공포될 예정이다.

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약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주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사업자(단체)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자측이 스스로 청구치 않을 경우 표준약관 제정이 불가능하였으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 등' 이라 함)가 공정위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개정법 제19조의2 제2항),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개정법 제19조의2 제3항, 제4항),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직접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활용도를 제고,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사용권장을 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달리 사용하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9조의2 제5항, 제6항).

셋째, 표준약관의 보급확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가 표준약관 표지(마크)를 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표지의 허위사용 등에 대한 제재근거 등을 마련하였다(개정법 제19조의2 제7항 내지 제9항). 또한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개별 약관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하였고, 소비자 오인성이 크고 표준약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표준약관 표지 사용의 운용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사용에관한고시"(가칭)를 전문가의 자문, 공정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중 제정할 계획이다.

※ 「표준약관사용에관한고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의 '부록(98면 이하)'을 참조하기 바람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개정, 중소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및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 또는 지급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개정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직접지급제도를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직접지급사유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건설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보증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재경부와 협의하여 회계예규를 개

정(2003. 12. 26.)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보증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지연이자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 위임규정의 위헌요소를 배제하였다. 즉, 현행 하도급법에서 지연이자율을 고시로 위임하면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 참작할 사유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헌소지가 있어 개정법에서는 상한(연 100분의 40범위 이내)을 명시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동 규정의 규범력을 강화하였다.

동 개정안은 2004. 1. 14. 공포하여, 그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산업별 상설 T/F 팀 운영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은 범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행태 시정 및 관련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그 동안 행태시정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산업별 종합적 접근을 통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미흡하였고, 또한 현행 범위반 유형별로 편성된 조직에서 시책추진을 담당함에 따라 산업별 자료축적과 정보공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주요 산업별로 상설 T/F를 편성·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별로 시장구조 및 동향, 기업환경, 관련제도 및 행태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불공정한 행태의 감시·시정 등 종합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의료·제약, 건설, 부동산, 방송, 사교육 등을 대상산업으로 하여 각 산업별로 과장급을 팀장으로 8개 T/F를 조직하고, 각 T/F는 국·과 구분 없이 10~20명의 팀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산업별 체계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산업별 T/F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동향 분석결과를 작성하고, 경쟁촉진 시책 추진방안, 실태조사계획 등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간 스팸방지 프로젝트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경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04년 1월 29일부터 실시되는 국제간 스팸메일 방지 프로젝트(Operation secure your server : 서버안전조치)에 본격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제안하여 현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전세계 27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4. 1. 29. 미국 FTC 내에 관련 웹페이지(www.ftc.gov/secureyourserver)가 개설됨으로써 본격 가동되며, 우선 스팸메일 발송에 악용되고 있는 전세계 오픈 릴레이 메일서버(또는 오픈 프록시 서버) 운용자에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OECD 회원국 경쟁당



국 등 정부기관 명의로 스팸메일을 방지하는 권고문을 e-메일로 발송하게 된다.

권고문 내용은 특정기관이나 업체가 사용중인 서버(컴퓨터)가 오픈 릴레이 서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스팸메일 발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FTC는 오픈 릴레이 메일서버 방지 방법 등 스팸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4만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내 통신판매업체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스팸방지 권고문을 발송하여 현재 운용하는 서버가 스팸메일 발송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사)한국통신판매협회가 개방 서버를 가지고 있는 모든 통신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픈 릴레이 서버의 문제점 및 그 퇴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한 스팸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오픈 릴레이 서버(오픈 프록시 서버): e-메일이 발송자로부터 최종 수신자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경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

2004. 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1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시행령 제 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2월 2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1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2. 2. 현재 345개로 전월 대비 3개사가 증가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 2. 505개에서 2004. 2. 2. 현재 504개로 1개사가 감소하여 공정거래법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 2. 현재 847개에서 2004. 1월중 9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7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2. 2. 현재 849개로 2개사가 증가하였다.

[2004. 1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1. 2.	편 입			제 외						증감	2004. 2. 2.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5개)	342	3	3	6	-	1	1	-	1	3	3	345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33개)	505	-	3	3	-	1	-	-	3	4	△1	504
합계(48개)	847	3	6	9	-	2	1	-	4	7	2	849

[2004. 1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 편입 : 9개사(회사설립 : 3, 주식취득 : 4, 기타 : 2)
- ◆ 제외 : 7개사(지분매각 : 3, 청산종결 : 1, 기타 : 3)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삼 성	(주)인터내셔널 사이버마케팅	인터넷 게임리그 운영	주식취득	삼성마이크로 유틸리티(주)	그의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청산종결
엘 지	(주)브이이엔에스	자동차설계 등	회사설립	(주)엘지카드	신용카드업	기타
	하이비즈니스 로지스틱스(주)	종합물류사업	회사설립			
에 스 케 이	티유미디어콕(주)	디지털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	회사설립	-	-	-
두 산	고려산업개발(주)	건설·제조업	주식취득	두산티엠에스(주)	소프트웨어개발 판매·임대	지분매각
	현대알루미늄(주)	전문건설업	기타			
롯데	(주)대하	생필품재배· 저장업	주식취득	-	-	-
포스코	(주)서면개발	건설업	기타	-	-	-
케이티 앤 지	한빛향료(주)	식품향료 제조판매업	주식취득	-	-	-
한 솔	-	-	-	한솔창업투자(주)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타
삼 보 컴퓨터	-	-	-	(주)나우콤	부가통신업	지분매각
	-	-	-	(주)나우에스엔티	서비스통신업	기타
	-	-	-	페이레터(주)	부가통신업	기타